

#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
----------	---

제출년월일 : 2022. 7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으로 담당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차후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자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를 업무 담당자로 지정하고, 위촉직위원회 구성시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를 적용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 위원 중 “농업축산과장”을 “귀농·귀촌 업무 담당 과장”으로 변경(안 제3조)
- 나. 귀농·귀촌인 지원위원회 간사 “귀농귀촌담당”을 “귀농·귀촌 업무 담당 팀장”으로 변경(안 제3조)
- 다. “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”를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적용하고자 함(안 제3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2. 02. 10. ~ 2022. 03. 0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# 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귀농·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**”를 “**각 호**”로 하고, “**농업축산과장**”을 “**귀농·귀촌 업무 담당 과장**”으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**귀농귀촌담당**”을 “**귀농·귀촌 업무 담당 팀장**”으로 한다.

이 경우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<u>각호</u>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, <u>농업축산과장</u>, 기술지원과장, 산림과장으로 한다. &lt;후단 신설&gt;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<u>귀농귀촌담당</u>으로 한다.</p>	<p>제3조(위원회의 설치 등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<u>귀농·귀촌 업무 담당 과장</u>----- ----- <u>이 경</u> <u>우,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</u> <u>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</u> <u>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</u>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귀농·귀촌 업무 담당 팀장</u>----- ----- -----</p>

# 관계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**제28조(조례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없음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중 제1호  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장 이용하
연락처	(033) 330 - 1306